

2022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이 의 영*

[目 次]

I. 국제재판관할 관련	IV. 보증신용장
II.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관련	V. 외국법의 해석
III. 운송 등 관련	VI. 중재
	VII.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I. 국제재판관할 관련

1.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9490 판결 [물품대금] [심불기각 확정]

[판시사항]

우즈베키스탄 법원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무 이행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에서 위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LST’의 소재지 경제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인 'LST'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소는 물론 위 LST의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거나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라는 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의 판매 및 영업활동 이행 장소로 카자흐스탄공화국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상 피고나 그의 판매 및 영업활동이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②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로서 그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가스보일러 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고(민법 제467조 제2항),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조),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 ③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물론 사업자등록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사업의 종목을 도매·무역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④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공급물품의 인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2031413 판결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판시사항]

미얀마 국적의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된 사무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① 피고는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미얀마에서 참여한 슈에 가스전개발사업 관련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미얀마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피고의 재산

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미얀마 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방법이 미얀마에 존재하고 준거법인 미얀마 법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나. 원고들은 외국국가인 미얀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체결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의 당사자 내지 보상금 지급주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의 실질이 미얀마의 주권적 행위인 수용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면제되거나 자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19가합586658 판결 [양수금] [항소심 계속중]

[판시사항]

재보험계약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중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분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이행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재보험계약은 재판관할에 관해 ‘중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중재와 관련되어, 혹은 중재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 법원에 제소되어야 하는 모든 분쟁이나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전속적인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재보험계약에서 혹은 이 사건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 문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문제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보험계약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베이징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보험계약 정산금 및 이 사건 즉시불 재보험금 청구는 이 사건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예정된 것일 뿐 ‘중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중재와 관련되어, 혹은 중재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 법원에 제소되어야 하는 분쟁이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보험계약 정산금 및 이 사건 즉시불 재보험금 청구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전속적인 재판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고(민법 제467조 제2항),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조),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재보험계약의 출제사인 A는 대한민국 국적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보험계약을 중개한 B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이고, C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식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보험계약 정산금 및 이 사건 즉시불 재보험금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재보험계약 정산금 및 이 사건 즉시불 재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19가합517782 판결 [물품대금] [확정]

[판시사항]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위반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이후에 법원의 관할을 다툰 사안에서, 변론관할의 성립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A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고, 한편 위 제품공급계약 제13조에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 A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A의 본점 소재지가 홍콩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위 조항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앞선 2020. 1. 14. 제1회 변론기일에 관할 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법원의 관할을 인정할 경우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절차의 진행 및 소송경제에도 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변론관할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51716 판결 [계정해지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확정]

[판시사항]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서비스 이용관계에 관한 분쟁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캘리포니아의 민사절차규정(Code of Civil Procedure) 제395.5조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일반 관할권이 존재하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은 위 캘리포니아법상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나.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 일방인 피고 구글이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점, 유튜브 서비스의 운영이 피고 구글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구글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 세계 모든 공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인터넷 기업인 점, 실제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이 원고가 업로드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점 등도 위 합리적 관련성을 보장하는 사정이다.
- 다. 유튜브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을 매개로 전 세계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관할이 인정된다면 피고 구글로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에 응소해야만 하는 지위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그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는 획일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할합의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이용자였는바, 원고를 유튜브 채널을 수동적으로만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구글 사이에 체결된 유튜브 서비스 이용 계약이 국제사법 제42조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마.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원고와 피고 구글 사이에 유튜브 서비스 이용 계약에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비스 이용 계약은 온라인 및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구글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할합의가 원고에게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II.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관련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나.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또는 소멸시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New York, 1974)]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33450(본소), 2020나2033467(반소) 판결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물품대금] [확정]

[판시사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에서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을 적용한 사례 / CISG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 / 위약금 산정 관련하여 CISG 제71조에 따른 구매의무 정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본소 청구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반소 청구 중 물품대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CISG’)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소 청구 관련 소멸시효와 상계 및 반소 청구 중 위약금청구 등에 관해서는 CISG에서 규율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 또는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나. 우리 민법이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채권자지체라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 것과 달리, CISG는 일원적으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문제로 다루어 규정하고 있다. 계약위반과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완전배상주의에 따르되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제한되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정지의 절차법에 따른다.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 다. CISG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no-fault principle). 또한 우리 민법 등과 달리 해제의 일반적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청산효과설에 따른 입장을 채택하였으며,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손해배상의무는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존속하는데, 여기서 손해는 계약해제 전에 발생한 손해는 물론 계약해제 후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 계약이 해제되고 일방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 거래를 한 경우 그 대체거래의 대금과 계약상의 대금과의 차이를 손해로 본다. 해제의 효과에 관한 CISG 제81조는 합의해제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 된다. 반소 중 물품대금청구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정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피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사례.

- 라. 위약금 산정 관련하여 CE 인증이 계약의 조건이었다거나 불량접수 내역 등 하자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CISG 제71조에 따른 구매의무 정지 주장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도 배척한 사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18가합54998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판시사항] CISG 규정에 따라 물품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청산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화장품 중 쌍둥이 모공팩의 하자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것으로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용기의 작은 규격 차이로 인하여 용기가 밀폐되지 않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쌍둥이 모공팩의 하자의 경우 이를 인도 즉시 발견하기는 어렵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이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의 이상을 확인하여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유통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쌍둥이 모공팩의 하자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CISG 제39조에 의하여 하자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CISG 제81조 제2항 전문,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중 쌍둥이 모공팩 부분의 해제에 따른 청산금으로서 지급받은 그 대금 상당액 및 이자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다. 원고는 피고에게 CISG 제5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b호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쌍둥이 모공팩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쌍둥이 모공팩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

Ⅲ. 운송 등 관련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나.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 나.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고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한편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의무자는 채무이행을 면하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제 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의 해상운송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상운송에 관한 분쟁 가운데는 단기간 내에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분쟁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적용되는데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명곤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023795(본소), 20238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운송료] [확정]

[판시사항]

세관의 통관거절/불가 등으로 발생한 지연배송 및 미배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을 면책하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배송되지 않은 것은 세관에서 이 사건 운송물의 통관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까지 위탁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과 제10조 라.항은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 운송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에 관한 책임은 화주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송료에 관세 등 통관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송장가격의 허위 기재를 통한 관세 감면 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와 X 사이의 운송위탁계약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화물이 하노이를 경유하여 중국에 도착할 경우, 피고가 X에 지급할 운송료에 중국 내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계약서에 첨부된 다른 운송료 요율표에는 “한국발 중국착: 광주 직배송, 세금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운송물은 하노이를 경유하여 중국에 도착한 것도 아니므로, 위 계약 내용을 들어 피고 내지 X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관세 등 통관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이 사건 계약에는 운송방법을 항공운송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7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에서 “항공 및 해상 운송”을 모두 언급하고 있고 운송료율도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측 담당자였던 A가 원고에게 항공으로 운송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수단에 관하여 고지한 것을 넘어서 원고와 항공운송으로만 운송을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서울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2027001 판결 [물품인도 등] [심불기각 확정]

[판시사항]

명의대여를 통하여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입물품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관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게 하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특허권자의 보세창고 직접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관세법 제174조 제1항, 제177조의2, 제179조). 그리고 관련 고시에서는 보세창고 운영인(특허권자)의 반·출입되는 물품의 확인 및 신고 의무, 재고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보세창고를 임대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보세창고의 운영을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권자인 피고가 특허권이 없는 A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나. 더욱이 A는 피고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계쟁물품을 피고 명의 창고에 장치된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한국물류통합정보센터 웹사이트에도 A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한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세창고 외벽과 인근 현수막에는 피고의 명의를 기재되어 있다. 이는 A가 관할관청에 특허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허권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다.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보세창고 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갖춘 법인이거나 토지 및 건물(2억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어야 하고, 본인이 보세사이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위 고시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처럼 관련 법령은 보세창고에 반·출입 및 보관·취급되는 화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갖춘 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게 정하였다. 위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 사건 보세창고 운영에 대한 특허를 받은 피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이 사건 계쟁물품의 무단반출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관련 규정이 보세창고 특허권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관세가 면제되거나 수입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도 특허권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여(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창고를 특허권자만이 운영하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는, 보세화물이 무단으로 반출되면 적정한 관세확보를 저해할 뿐 아니라 보세화물의 선하증권 소지자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이 반·출입되는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본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의무 등을 부과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에서는 명시적으로 ‘화물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관련 규정은 관세 확보 및 관세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보세화물 권리자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법익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합559539 판결 [화물보관비 청구] [확정]

[판시사항]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 / 가압류신청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운송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무료 장치기간(free time)은 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서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화물의 양하일인 위 2019. 6. 6.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인 2019. 6. 10.이 된다.
- 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원고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 상법 제811조 본문 도입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적하권리관계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를 단기제척기간으로 소멸케 하려는 것’이고, 다만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제6항을 수용하여 같은 조 단서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권리행사의 방법을 ‘재판상 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구 상법 제811조 본문의 1년의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임은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

IV. 보증신용장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 가.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의 의미 /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신용장에 지급청구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경우, 위 조건을 지급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나.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에서 보증은행 등에 대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가.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에 의한 보증은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신용장이 발행된 기초계약상 의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자에 대한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보증이다[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이라 한다) 제4조 참조].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 점에서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에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 단절되는 추상성과 무인성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신용장에 지급청구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한 조건은 지급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볼 수 없다(UCP 600 제14조 h항 참조).
- 나.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에 대하여 무인성과 추상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마저 그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위와 같은 보증신용장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은행 등에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은행 등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과 무인성이라는 보증신용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V. 외국법의 해석

1.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20129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판시사항]

몽골국 민법 및 회사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몽골국 민법상 표현대리 인정 요건

[판결요지]

- 가. 피고는 몽골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B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몽골에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제사법 제16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대표권 또는 대리권의 존부,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의 효력, 이사회 결

의 요부 및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준거법은 몽골국 법이다. 계약의 체결 장소와 계약 내용 등에 의할 때 몽골국이 이 사건 사안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계약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도 몽골국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다.

- 나. 몽골국 회사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할 때,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A가 아닌 B가 체결한 계약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그리고 본인인 A가 대리인인 B 및 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러한 대리 및 대리권 수여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 다. 몽골국 민법 제65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원고가 제출한 몽골국 변호사의 의견서, 몽골국 판결례 및 문헌 자료, 피고가 제출한 몽골국립대 교수의 의견서, 몽골 법무법인 의견서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본인이 법률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권대리인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법률행위의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마치 정당한 대리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안전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즉, 몽골국 민법이 대리권 수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대리인 및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점과 같은 선상에서, 무권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법률관계에서 필요한 통상의 조심성과 신중함을 잃어버려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2.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2001019 판결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판시사항]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 가. 일방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착오가 용납될 수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신뢰한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가 부당할 정도로 입장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방의 착오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착오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착오에 기여한 바 없다면,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플로리다주 항소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주 판례법상 일방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요건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

을 인용한 여러 항소법원 판결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건으로는, ① 착오가 (용납될 수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닐 것, ② 계약의 취소를 불허하는 것이 불공정할 것, ③ 계약을 신뢰한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가 부당할 정도로 입장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을 것, ④ 그 착오가 계약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등이 있으므로, 위 요건을 기준으로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등급과 소재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취소를 불허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위 계약을 신뢰한 피고의 입장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품의 등급 및 소재에 관한 착오가 계약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이 사건 제품의 등급 및 소재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하여 인공 발목, 어깨, 엉덩이 등 여러 인공관절 제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던 A의 사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제품의 등급이 2등급이어야 한다는 점과 그 대퇴골 부품이 코발트-크롬 소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표시하여 그러한 사항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미국 플로리다주 판례법에 의하면,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즉 계약 취소 청구는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이론에 따라 해당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하였을 지위로 회복시켜줄 것을 구하는 것이다.
- 라. 원고가 제품의 등급과 소재에 대하여 착오한 것은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고, 또한 원고가 계약을 통해 인수한 주식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고 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식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의 지위와 권리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VI. 중재

1. 대법원 2022. 9. 7.자 2020마5970 결정 [중재판정의 집행]

[판시사항]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있어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중재법 제22조 제1항), 중재요청서의 통지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중재판정의 취소, 승인 거부 또는 집행 불허 사유로 정하고 있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1호 (가)목]. 한편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확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 문의 혹은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채권·채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8호 (라)목], 이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적절한 조회’에 포함될 수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판결 [중재판정취소] [확정]

[판시사항]

중재판정부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중재합의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른 중재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것 외에도 그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 역시 위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소송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 진행권한이 중재법 제20조 제2항 후문에 열거된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란 단순히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으로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뜻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부의 석명권 행사가 적법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정당한 공격방어방법의 행사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상법이 신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정한 제척기간의 도과에 따른 효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2043570 판결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판시사항]

- 가. 중개인계약상 중재합의 및 관할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례에서,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 청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고, 중재절차를 관할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사례
- 나.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의 본안 전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적극)
- 다.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사례.

[판결요지]

-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개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제9조 제1문, 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고(제9조 제2문),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제10조)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중개인계약서는 영국축구협회의 표준 중개인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고만 한다)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 중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9조 및 제10조는 표준계약서 제6조 및 제7조를 일부 수정한 것인데,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분쟁(DISPUTES)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중재기관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를 추가하였고(제9조 제1문 b)항), 제9조 제2문을 신설하였으며, (b) 준거법(GOVERNING LAW)과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제7조에는 영국 법원 등이 독점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비독점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② 표준계약서는 제6조에서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영국축구협회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7조에서 영국 법원 등에 독점적 재판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7조는 제6조의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 외 또 다른 분쟁해결방법으로 재판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 두 조항 사이에는 모순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에 의하면, 표준계약서와 같이 어떠한 계약에서 분쟁해결은 중재에 의할 것을 정하면서 동시에 특정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관할법원의 지정은 ‘중재를 관할·감독하는 법원(the law governing or supervising the arbitration)’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제6조는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 조항에 해당하고, 제7조는 그러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법원에 대하여 증거의 보존 등에 관한 임시조치 명령 신청, 중재인 선임 및 해임 신청 등이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를 지원·감독하는 재판관할권이 영국 법원 등에 있음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이는 표준계약서 제6조와 제7조를 모순 없이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 ③ 이 사건 중개인계약도 제9조 제1문에서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10조에서는 영국 법원 등에 비독점적 재판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어, 제9조 제1문과 제10조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법 및 웨일즈 법이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9조 및 제10조를 해석하는 데도 앞서 살펴 본 표준계약서에 관한 영국 법의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10조는 표준계약서 제7조와 같이 중재절차를 지원·감독하는 법원으로 영국 법원 등을 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④ 한편 영국 법원 등의 독점적 재판관할권을 정한 제9조 제2문과 비독점적 재판관할권을 정한 제10조는 이 사건 중개인계약서의 문언과 구조, 작성 경위 및 위와 같은 제10조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적용 영역이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9조 제2문은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어서 제9조 제1문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는 분쟁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관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9조 제1문에서 정한 중재대상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이 실기되는 경우까지도 제9조 제2문에 따라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 관할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9조 제2문을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시도될 경우 포괄적으로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비독점적 재판관할권을 정한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10조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피고는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10조가 제9조 제2문의 문언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제10조는 사실상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10조는 피고가 당시 소속되어 있던 영국 첼시FC가 아닌 다른 국가 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영국 법원 등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는 표준계약서 제7조를 비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는 조항으로 수정한 것이어서(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9조 제1문에 표준계약서 제6조에는 없던 스포츠중재재판소를 중재기관으로 추가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중개인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10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원고가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의 본안 전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소는 중재인의 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영국축구협회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에는 이 사건 중개인계약 제9조 제2문의 관할합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소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영국 법원 등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Ⅶ.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집행판결]

[판시사항]

-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나.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는 것만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른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이러한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 나.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은 피해자 등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 처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제35조). 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고, 계속해서 개인정보, 근로관계,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3배 내지 5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배상을 통해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요컨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합526383 판결 [집행판결] [항소심 계속중]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송달의 적법성, 적시성 요건의 충족 여부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요건의 충족 여부

[판결요지]

- 가. 미합중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으로서 송달절차에 관하여 헤이그 협약이 관련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한민국 또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헤이그 협약 제10조 제1호에 대한 반대선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헤이그 협약의 체약국인 미합중국 법원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헤이그 협약이 준수되어야 하고, 헤이그 협약을 위반하여 송달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적 송달은 헤이그 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적 송달 이후 미국법원에 의하여 헤이그 송달이 이루어진 점, 미국법원은 헤이그 송달의 송달촉탁을 하면서 기일소환장에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미국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9. 4. 8. 결석재판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국법원이 부적법한 이 사건 사적 송달에 기초하여 결석재판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송달은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외국재판에서의 송달이 위와 같은 요건(적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재판국법이 정한 송달기간의 준수,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 외국 변호사를 접촉하기 위한 시간, 적절한 소송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통상절차인지 보전절차인지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라. 피고는 영문으로 된 소송서류를 해독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일부 소송서류에 국문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결석재판명령이 내려졌고 이후의 절차는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미국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미국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피고 스스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국판결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追記〕

저는 아직 고 윤성근 원장님께서 투병 중에도 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세미나에 영상으로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인께서는 국제거래 분야의 국내외 판례와 법리는 물론, 국제상사법원, 해사법원, 국제중재 등 관련 세계적 논의 흐름과 새로운 소식에도 밝으셨습니다. 후배 판사들에게 그러한 소식을 알리고 함께 미래 전망을 토론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셨는지요. 인자하고 소탈하신 특유의 화법으로 한참 어린 후배들과도 쉽게 대화를 이끌어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제 국제거래 및 상사재판 실무에서 법리와 제도 형성을 이끌어가는 국제사회의 스티어링 그룹에 들어가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2020년 연구회 내 국제상사포럼(SIFoCC) 연구팀 출범을 이끌어주셨고, 작년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의 발족과 판결속보 발행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글은 고인께서 해마다 손수 정리하셨던 국제거래법 분야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중요판결 소개 자료의 취지를 따라 2022년도의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저의 능력이 한참 부족함을 알기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고인의 뜻과 발자취를 이어가는 국제거래법학회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 판례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법리 발전과 법률문화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고인의 말씀을 되새기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 높은 식견에 다시 한 번 흠모와 존경을 표합니다.